

자체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9. 8.



문화재청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4
2. 감사대상기관	4
3. 감사중점	4
4. 감사실시 과정 및 결과 처리	4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1. 부속시설등 및 부속기관등 설치 규정 재정비 필요 (개선)	6
2. 장학금 지급 일부 미흡 및 관련 규정 재정비 필요 (시정·통보·개선)	8
3. 교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제출 미흡 (통보)	13
4. 논문 심사 시 논문 유사도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필요 (개선)	15
5. 소장품 수증 절차 미준수 및 소장품대장 작성 일부 미흡 (기관주의)	17
6. 장기교육과정 실습재료 및 성과품 관리 미흡 (기관주의·개선)	19
7.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전문교육 공고기간 미준수 (기관주의)	22

8. 대관료 산정 미흡 및 관련 규정 정비 필요 (개선)	24
9. 용역 과업 요구 부적정 및 계약금액 조정 미실시 등 (기관주의·시정)	27
10. 교내 현장발굴실습 예산 집행 일부 부적정 (기관주의)	30
11. 문화재실측설계기술자 양성방안 개선 강구 (권고)	32
12. 도제식 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표준교재 개발 및 복수강사제 도입 (모범사례)	36

I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 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이전 자체종합감사는 2016. 11. 7.부터 11. 18.까지 5일간 실시한 바 있으며, 「문화재청 감사규정」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되어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전통문화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감사중점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회계감사와 더불어 입시·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부속기관 운영 실태 및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교원의 출강 및 외부강의 등 복무에 관한 사항, 전통문화교육원 교육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및 예산절감 모범 사례 발굴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4. 감사실시 과정 및 결과 처리

이번 감사는 2019.5.20.부터 5.31.까지 10일간 법무감사담당관실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과 관련하여 2019.5.3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을 청취하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과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별첨

문 화 재 청

개 선

제 목 부속시설등 및 부속기관등 설치 규정 재정비 필요

관계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 제15조(부속시설 등)에 따라 총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대학교’)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는데, 부속시설등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령’) 제13조(부속시설 등)에는 연구시설로 연구용 실험실, 전통문화연구소 등을, 부속시설로 산학협력단 시설 및 부대시설, 각종 실습실 등을, 그 밖의 시설로 체육관, 학생기숙사 등을 명시하였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이하 ‘학칙’) 제32조 제3항은 ‘령’에 따라 설치한 부속시설등 외에 9개의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이하 ‘부속기관등’)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아래 [표 1]의 부속기관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표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속기관등 현황

연번	기관명	설치시기	재정 지원 (단위: 백만 원)		비고
1	신문방송사	'00.3	'17년	39 (자체수입금)	
			'18년	35 (자체수입금)	
			계	74	
2	학술정보관	'02.4.23	'17년	600 (국고598, 자체수입금2)	
			'18년	614 (국고604, 자체수입금10)	
			계	1,214	
3	평생교육원	'14.2.26.		-	2017년부터 중단
4	학교출판부	'15.3		-	
5	학생상담센터	'15.5.21.	'17년	0	
			'18년	22 (자체수입금)	
			계	22	

연번	기관명	설치시기	재정 지원 (단위: 백만 원)		비고
6	정신문화융합센터	'16.3.10.		-	폐지('19.3.1.)
7	교양기초학부	'17.2.27.	'17년	23 (국고10, 자체수입금13)	
			'18년	30 (국고19, 자체수입금11)	
			계	53	
8	국제문화재교육센터	'19.3.11.		-	
9	취·창업센터	'19.3.11.		-	

특히 위 [표 1] 부속기관등 중 7개는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 대학교로 변경되는 '법' 시행('12.7.15.) 이후에 학술연구 지원, 평생교육 진흥, 양성평등 실현 등 대학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설치한 것이다.

한편 대학교는 4개 부속기관 운영비로 2017년에 662백만 원, 2018년에 701백만 원을 재정 지원하였는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대학의 의무)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같이 지속적인 재정이 투입되는 부속기관등은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부속기관등'은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속시설등'과 성격이 유사하나, '영'에서의 위임 사항이 없이 '학칙'에만 규정하여 '부속기관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부속시설등 및 부속기관등의 성격을 재정비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부속시설등과 부속기관등의 성격이 유사하므로 관련 규정을 재정비 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시정(환수) · 통보 · 개선

제 목 장학금 지급 일부 미흡 및 관련 규정 재정비 필요

관계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용

가. 장학금 지급 일부 미흡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학교규칙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 제78조(장학금)에 따르면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대학교') 총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9조의2(장학금 선정 제한)는 징계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학비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아래 [표 2]의 2018년 2학기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을 2019년 1학기 가족장학금(등록금 40% 감면) 장학생으로 선발 ('19.4.12.)하여 장학금 753,200원을 지급하였다.

[표 2] 2018학년도 2학기 학사경고 명단

학과명	학년	학번	이름	신청 학점	취득학점	평점평균
문화재 보존과학과	2	000000000	●●●	17	14	1.94

나. 장학금 지급계획 수립 미흡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학교규칙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 제78조(장학금)에 따르면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대학교’) 총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장학금 규정」은 장학금의 재원 종류, 장학위원회 설치, 장학위원회 기능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대학교는 매년 「대학·대학원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장학금 종류별 장학생 선정 자격기준, 장학금 지급기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7학년도 대학 장학금 지급계획(이하 ‘장학계획’) [표3]을 파악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표 3] 2017학년도 대학 장학금 지급계획

목차	주요 내용	비고
기본방침	• 수업료 감면 한도액(전체 수업료의 70% 초과 불가), 중복수혜 금지 등	
장학생 자격	• 장학생 자격기준 및 장학생 자격상실 기준	
장학금 재원	• 국가지원금, 자체수입금, 발전기금 (이상 교내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지원금 (교외)
장학금 종류별 세부계획	• (등록금 관련) 입학성정우수장학금 등 8종 • (등록금 외) 공모전수상자 포상금 등 10종	전년 대비 신설(1종).확대(2종)

첫째, 2017학년도 장학계획에 장학금의 신설 및 확대를 추진할 때에는 추가 소요에 필요한 재원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신설 및 확대되는 장학금(3종)에 대한 재원 종류, 재원 규모 등이 명확하지 않다.

둘째, 2017학년도 장학계획은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모든 장학금의 전반적 내용을 담고 있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다. 따라서 매년 수립하는 「대학·대학원 장학금 지급계획」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7조에 명시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학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2017학년도 장학계획은 장학위원회 심의 없이 수립·시행하였다.

매년 수립하는 「대학·대학원 장학금 지급계획」은 장학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신설·확대하는 장학금의 재원 충당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 장학금 지급 계획 수립과 관련된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장학금 학비 면제 규정 재정비 필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총장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 제78조(장학금)에 따르면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대학교’) 총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교는 최근 5년간(‘14~ ‘18) 대학·대학원 장학금 지급계획에 정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장학금”(이하 ‘장학금’) 지급방침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학부생은 2.0(C⁰)이상, 대학원생은 3.0(B⁰)인 학생에게 학비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장학금 지급방침은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래 [표 4]와 같이 2015년, 2017년, 2018년 3차례 변경되었다. 하지만 대학교는 시행규칙은 개정하지 않고 장학금 지급방침만 변경함에 따라 시행규칙과 장학금 지급기준의 감면혜택이

상^이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4] 최근 5년간 장학금 지급방침 변경사항

연도	구분	지급방침		
		대상	학비 감면혜택	변경사항
2014년	문화재수리기술자 장학금	입 학생, 재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
	문화재수리기능자 장학금		상동	
2015년	문화재수리기술자 장학금	입 학생, 재 학생	등록금 30% 면제	○ 기성회비가 폐지되어 수업료에 편입 (당초) 수업료+기성회비+입학금→(변경) 수업료+입학금 ○ 따라서 전년대비 지급액에 맞춰 수업료 비율을 계산하여 감면률 정함 (예시) (‘14년) 등록금 약1,900,00원(평균) 중 수업료 장학금(373,000원)을 지급(약 등록금 20% 수준) ↓ (‘15년)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수업료 20%를, 문화재 수리기술자는 자격증 위상 등을 고려 30%로 차등 책정
	문화재수리기능자 장학금		등록금 20% 면제	
2016년	문화재수리기술자 장학금	입 학생, 재 학생	등록금 30% 면제	변경 없음
	문화재수리기능자 장학금		등록금 20% 면제	
2017년	문화재수리기술자 장학금	입 학생, 재 학생	등록금 30% 면제	○ 문화재수리기능자 장학금 폐지 - 상대적으로 자격취득이 용이하며 자격증 위상이 높지 않아 폐지
	문화재수리기능자 장학금		<u>폐지</u>	
2018년	문화재수리기술자 장학금	재 학생	등록금 50% 면제	○ 문화재수리기술자 지급률 상향 - (재학생)기술자 자격증 취득 독려 ○ 입학생은 감면 제외

따라서 대학교는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 장학금 학비 감면과 관련하여 규정 정비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1) 시행규칙(학비 면제)과 ‘18년 장학금 지급기준(기술자 등록금 50% 감면, 기능자 감면 제외)이 상이

1. 장학생 선정 제한 대상자에게 지급한 장학금 753,200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2. 대학·대학원 장학금 지급계획 수립시 장학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신설·확대하는 장학금은 추가 소요에 필요한 재원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3.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 장학금 학비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혜택이 상이하게 적용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문 화 재 청

통 보

제 목 교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제출 미흡

관계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용

가.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제출 미흡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14조(보고서 제출)제2항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를 교무과에 제출하고, 행정자치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에 직접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은 공무국외여행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교무과에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 동안 2017년부터 2019년 4월 말까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의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제출 현황 및 행정자치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록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114건의 보고서 중 기한 내에 교무과에 제출한 보고서는 74건(64.9%)이고, 나머지 36건(31.6%)은 1개월 이상부터 최대 660일 제출이 지연되었고, 총 4건은 감사기간까지 미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행정자치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는 총 114건 중 14건(12.3%)에 불과하고 나머지 100건은 감사기간까지도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고 있는 등 공무국외여행보고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내용 부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14조(보고서 제출)제3호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보고서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상의 여행 목적과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여행 결과, 주요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2017년부터 2019년 4월말까지 제출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의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중 2019년도 보고서 9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7건의 보고서가 여행개요와 사진을 포함하여 총 3페이지 이내(5건은 2매/공무국외여행계획서는 제외)로 작성되어 있으며, 보고서 내용 또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상의 여행 목적과 여행 결과가 세부일정에 따라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주요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이 간략하게 작성되어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교무과에 미제출한 공무국외여행보고서와 행정자치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미등록한 보고서는 조속히 이행토록 하는 등 보고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상의 목적과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여행 결과, 주요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개 선

제 목 논문 심사 시 논문 유사도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필요

관계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용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 훈령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정하였다.

위 지침에는, 대학 등은 자체의 연구 활동 등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하여 동 지침을 토대로 자체적인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구윤리지침이 없을 경우 동 지침을 학위논문 발표 등 자체의 연구 활동의 연구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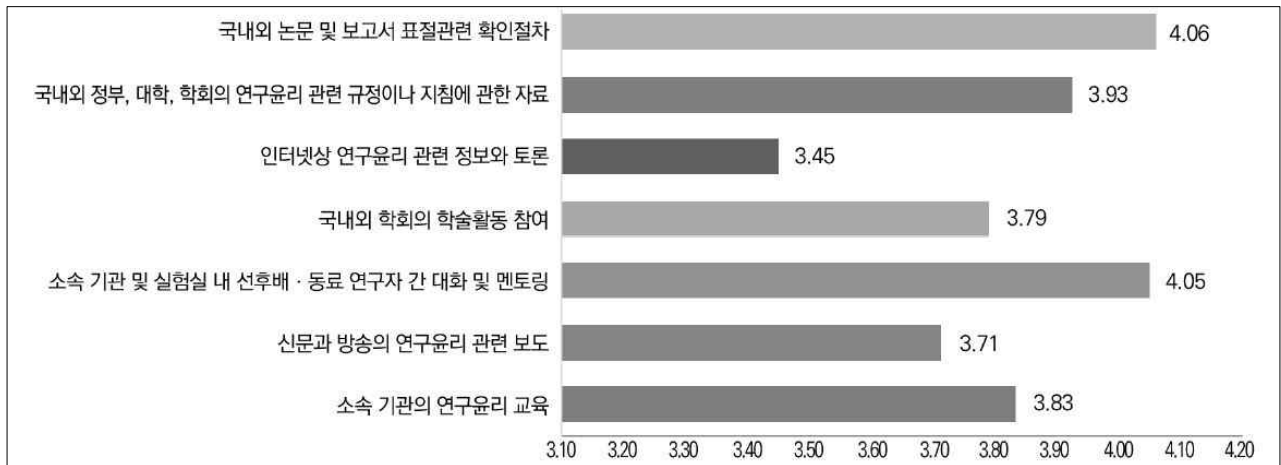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대학교’)는 자체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대학교 구성원이 작성하는 논문 등의 연구실적물을 작성자가 자발적으로 표절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표절방지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대학교 포털 사이트에 설치(2016.11.15.)하였다.

이후, 대학교는 논문 작성 시 자발적인 점검을 통한 학문적 양심 준수와 연구윤리 확립으로 대학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하고자, 대학원 논문심사 절차에 논문유사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2017.2.24.)하여 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의 의견을 수렴(2017.3.2./2017.3.4.)하였으나, 감사기간 현재(2019.5.31.)까지 별도로 논문유사도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²⁾이다.

2) 일반대학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논문제출자로 하여금 논문과 함께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대학 교원의 연구윤리 인식수준 조사에 관한 연구』(2019.4.)에서 ‘결론 및 시사점’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및 표절 검색 프로그램 등의 보급 및 확산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였으며, ‘연구윤리 준수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³⁾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국내외 논문 보고서 표절관련 확인절차’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그림] 연구윤리에 미친 관련 요인 (5점 척도)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대학원 논문심사 절차에 논문유사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3) 설문조사(2019.2.11.~2.15.) 대상은 2018년 한국연구재단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 교원 2,186명임

문 화 재 청

기 관 주 의

제 목 소장품 수증 절차 미준수 및 소장품대장 작성 일부 미흡

관계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대학교')는 국가귀속유물 한국화 등 299종, 관리이관유물 48종, 구입 및 기증받은 미술품 208종, 기증 민속품 411종 등 총 966종의 소장품을 보관·관리하고 있다.

대학교는 위의 소장품을 관리하며, 제한된 수장 공간과 기존 기증품의 학술적 가치 여부 및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과정 중 무분별한 수증을 막고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수증규정(이하 '수증규정')」을 제정('16.10.24.)하였다.

「수증규정」에 따르면 “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거나 학술적 가치가 높고 학교 교육운영 및 학습자료 등에 도움이 되는 물품⁴⁾과 물품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아 소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총장이 기증 물품을 수증할 때는 수증심의위원회에서 수증 여부를 심의하여 재적위원 5명중 2/3이상 찬성으로 수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5] 수증규정 제정 이후 수증물품

수증물품	수증일자	수증심의위원회 개최여부
공예공모전 수상작 2점	2017. 5.10	미개최
궁궐관련 유리건판 사진액자 109점	2017.11.17	미개최
■■■■ 묘 출토유물 일괄 41점 ■■■■ 묘 출토유물(김사위 배위) 일괄 21점	2019. 5. 2	개 최
3건 173점		

4) 수증규정 제3조(적용대상)

1. 미술품, 2.공예품, 3.유물, 4.기타 소장 자료로서의 학술적 가치가 높고 학교 교육운영 및 학습자료 등에 도움이 되는 기증물품

대학교는 수증규정 제정 이후 [표 5]의 3건 총 173점에 대해 기증을 받았으나, 1건 62점에 대하여만 수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증을 결정하였을 뿐 2건 111점에 대하여는 이러한 절차 없이 수증하였다.

또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르면 구입, 기증 등으로 학교에 입수된 소장품에 대해 소장품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였다.

●●●●대중회가 기증(2014.7.25.)한 ●●●● 묘 출토유물(수의, 보공, 염습제구 등) 28건 62점에 대해 수증 및 수탁유물심의위원회를 개최(2015.6.4.)한 후 수증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소장품대장에 등록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기증물품을 수증할 때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소장품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소장품에 대하여 소장품대장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기관주의 · 개선

제 목 장기교육과정 실습재료 및 성과품 관리 미흡

관계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전통문화전문과정)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대학교’)는 전통문화 및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통문화전문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부속시설로 전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을 개원(‘08.3.5.)하였다.

교육원은 교육과정을 교육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은 단기교육과정으로, 6개월 이상은 장기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장기교육과정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문화재수리·복원 전문인 양성과정⁵⁾을 운영하다가 2012년부터 문화재수리기능자(기능인) 양성과정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2014년부터 기초과정(7개 종목), 심화과정(4개 종목), 현장위탁과정(3개 종목)으로 확대하여 2019년에는 기초과정(7개 종목) 및 심화과정(7개 종목), 현장위탁과정(8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의 수료자 및 수료자들의 수리기능자 자격 취득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및 수리기능자 자격 취득 현황

년도	운영과정	수료인원(명)	수리기능자 자격취득 현황		
			응시자	취득자	취득율(%)
2012	기초 4개	37	28	14	50
2013	기초 7개	53	42	28	67
2014	기초 7개, 심화 4개, 현장위탁 3개	78	74	34	46
2015	기초 7개, 심화 6개, 현장위탁 6개	107	77	36	47
2016	기초 7개, 심화 7개, 현장위탁 7개	110	78	42	54
2017	기초 7개, 심화 7개, 현장위탁 7개	114	84	45	54
2018	기초 7개, 심화 7개, 현장위탁 8개	122			
합계		621	383	199	52

5) 2년 2개과정(전통회화 문화재 수리·복원 전공, 전통목칠 문화재 수리·복원 전공)

가. 실습재료 관리 미흡

교육원은 장기교육과정 교육생 실습을 위한 실습재료(재료 및 공구)를 구입하여 교육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2017년은 상어피 등 318종 17,292개(201,331천원), 2018년은 생칠 등 308종 28,192개(235,906천원)를 구입·제공하였으며, 이중 구입단가가 10만 원 이상인 실습재료는 2017년에 모시 등 66종 288개(58,998천원), 2018년에 금박 등 61종 277개(54,525천원)에 달한다.

교육원은 수업 중 강사 등이 요청하면 실습재료를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예비품을 확보하고 적정 수량에 미달할 경우 구매를 추진하며, 보관된 실습재료의 반입·반출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원은 2012년 ‘전통문화교육원 실습재료 구입 및 관리 부실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과 고가의 실습 재료의 경우 별도의 물품대장 작성 및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보받았고, 이에 따라 「전통문화교육원 실습재료 운용 및 관리 매뉴얼(이하 ‘관리 매뉴얼’)」을 마련(‘12.7.2)하였다.

그러나 2019년 5월 감사 시점 현재 실습재료 창고를 확인한 결과 반출입대장이 작성 및 비치되지 않았고, 실습재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재고를 파악·보고하도록 하였으나 2015년 1월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교육 성과품의 관리·활용 방안 마련 필요

운영지침 제11조의3(교육성과품 관리 및 활용)에 따르면 교육생이 제작한 교육 성과품(이하 ‘성과품’)은 차기년도 교육생의 교육보조 자료와 교육원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장기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관리목록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성과품 관리·활용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다.

교육원은 장기 교육과정에 따른 성과품 중 일부(소목과정 성과품 등)를 대학본부 및 교육원 등에 전시활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교육원 보관고에 보관중이다.

교육원은 매년 장기교육과정 종료 후 성과품의 장기 관리 여부를 판단한 후 장기 관리가 필요한 성과품에 대하여는 관리목록을 정하여 통일된 양식으로 누적·관리 하여야 함에도 감사시점 현재, 성과품 목록을 연도별 개별 양식⁶⁾으로 관리하고 있어 누적 수량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등 관리목록 작성이 미흡하다.

그리고, 매년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운영계획에 심화과정 교육생 성과품에 대한 활용방안⁷⁾을 포함하고 있으나, 성과품 관리·활용에 대한 세부기준은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번 감사 기간 중 보관고를 점검한 결과 성과품이 보관고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표 7]과 같이 매년 약 50여점 이상의 성과품이 생산됨을 감안할 때 적절한 활용 방안 및 세부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7]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교육결과물 제작 현황

년도	운영과정	교육결과물	
		기초과정	심화과정
2012	기초과정(배첩 등 2종목)	2쪽 가래개 등 6	-
2013	기초과정(배첩 등 4종목)	사방탁자 등 10	-
2014	기초과정(6종목), 심화과정(3종목)	만자문꿍음질함 등 28	의걸이장 등 13
2015	기초과정(7종목), 심화과정(7종목)	궁중 완자 등 542	전주반달이 등 58
2016	기초과정(7종목), 심화과정(8종목)	열대어 협저 등 190	나전칠함 등 64
2017	기초과정(8종목), 심화과정(8종목)	전주장 장식일괄 200	미릿장 등 71
2018	기초과정(8종목), 심화과정(8종목)	경대 등 519	문갑장식일괄 등 56
합계		1,495점(건)	262점(건)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1. 실습재료 구입 및 제공에 대한 반출입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실습재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재고를 파악·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2. 교육성과품을 적정하게 관리·활용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6) 2012년 교육성과품별 사진 첨부, 2013년 이후 교육성과품별 사진 미첨부, 보관 장소 미기록 등

7) 수리현장 제공, 교육재료 재활용 대장간 제작 철물 수리현장 제공, 소목가구 해체실습, 병풍틀 재활용, 공공장소, 건축문화재 내부 공간 비치(소목가구, 칠기) 등

문 화 재 청

기 관 주 의

제 목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전문교육 공고기간 미준수

관계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감리원은 일정기간 내에 소정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전문교육의 일시·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문화재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에는 위 전문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에 전통문화교육원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전문과정을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감사대상 기간인 2016년 11월 이후 전통문화교육원이 실시한 전문교육 현황 중 문화재청 및 전통문화교육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 실시 공고 사항을 살펴본 결과, 전통문화교육원은 2017년에는 전문교육 연간 일정을 전년도 11월에 문화재청 및 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나, ▲ 2018년에는 전문교육 연간 일정을 전년도 12월에 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여, 4회 중 1회는 사전공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 2019년(5월29일까지)에는 3회의 전문교육 일정을 기수별로 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면서 모두 사전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⁸⁾

8) 2019년의 경우,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고는 없었으나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수리기술자로 연간 일정을 통보(2019.1.3.)하였고, 수리 기술과에서는 해당 업자에게 연간 일정을 문서로 통보(2019.1.7.)하였음

[표 8] 전문교육 실시 홈페이지 공고 현황

연도	기수	교육기간	수료인원	공고일자		사전공고 일수	비고
				문화재청 홈페이지	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		
2017	15기	1.9.~1.13.	41명	2016.11.9.	2016.11.9.	61	
	16기	2.6.~2.10.	65명			89	
	17기	4.24.~4.28.	85명			166	
	18기	6.26.~6.30.	69명			229	
	19기	9.4.~9.8.	51명			299	
	20기	11.6.~11.10.	54명			362	
	21기	12.4.~12.8.	74명			390	
2018	22기	1.22.~1.26.	39명	-	2017.12.11.	42	미준수
	23기	2.19.~2.23.	26명	-		70	
	24기	4.16.~4.20.	38명	-		126	
	25기	10.29.~11.2.	30명	-		322	
2019	26기	1.21.~1.25.	35명	-	2019.1.3	18	미준수
	27기	2.18.~2.22.	30명	-	2019.1.25.	24	미준수
	28기	4.1.~4.5.	38명	-	2019.3.6.	26	미준수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전문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전공고 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개 선

제 목 대관료 산정 미흡 및 관련 규정 정비 필요

관계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대학교')는 대학교 시설 중 체육관과 안국동 별궁 및 유현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관규정(이하 '대관규정)」을 마련하였고, 대관 신청 시 대관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대관규정에 따르면 대관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관 신청자로 하여금 [별표 1]에 따른 대관료를 사용일 전에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하게 하였다.

[별표 1] 대관료(제7조 제1항 관련)

구 분		기본요금(4시간이내)	초과요금	비고 (1일 기준)
체육관	체육경기	200,000원	1시간당 기본요금의 50%	700,000원
	체육경기 외	240,000원		840,000원
안국동 별궁		300,000원	1시간당 기본요금의 50%	1,050,000원
유현당		300,000원	1시간당 기본요금의 50%	1,050,000원

[표 9] 안국동 별궁 및 유현당 유상 사용 허가 내역(2017~2019.5)

신청자	대관 목적	대관 장소	대관 일시	대관료(원)	비고
(주)△△△△ △△	영화 「▲▲」 촬영	유현당	'17. 8. 3. 9시 ~'17. 8. 6. 7시	8,406,480	유현당 냉방료 (6,480원) 포함
		안국동 별궁	'17. 8. 5. 9시 ~'17. 8.10. 7시		
(주)▷▷▷▷ ▷▷	영화 「▶▶▶▶▶▶」 촬영	안국동 별궁	'18.11.19.~11.21. 9시~17시 '18.11.22.~11.23. 8시~21시	3,750,000	
2건				12,156,480	

2017년부터 2019년 5월 감사시점 현재까지 대학교는 안국동 별궁 및 유현당을 영화 촬영 장소로 사용하도록 [표 9]와 같이 유상 사용 허가하였고, 두 건 모두 기본 대관 시간인 9시~18시(이하 '기본시간') 외에 대관이 이루어졌음에도, '영화 「▶▶▶▶▶」 촬영(이하 '▶▶▶▶▶')건에서는 기본시간 외 기타시간에 대한 대관료를 별도로 부과한 반면, '영화 「▲▲」 촬영(이하 '▲▲')건은 [별표 1]의 비고(1일 기준)를 근거로 기타시간에 대한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관규정 중 안국동 별궁 대관료 비고(1일기준)란의 1,050,000원은 기본 시간 9시간 중 4시간 기본요금 300,000원과 5시간에 대한 초과요금 750,000원 ($5 \times 300,000 / 2$)을 합한 금액이며, ▲▲ 건의 촬영 및 장소사용이 기타 시간에도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 건의 경우와 같이 기타 시간 대관료를 별도로 산출하여 부과함이 타당하였다.

[표 10] 영화 「▲▲」의 대관료 등 재산정

단위 : 원

대관 장소	대관 일시	항 목	당 초(A)	재산정(B)	차액(B-A)
유 현 당	'17. 8. 3. 9시 ~'17. 8. 6. 7시	대 관 료	3,150,000 (1,050,000원×3일)	9,600,000 {(70시간-12시간)*15만원+3일*30만원} * 70시간은 총사용 시간이며 12시간은 3일 기본시간 (4시간*3일)	6,450,000
		냉·난방요금	6,480 (8시간×9kw/h×90원)	56,700 (70시간×9kw/h×90원)	50,220
안국동 별궁	'17. 8. 5. 9시 ~'17. 8.10. 7시	대 관 료	5,250,000 (1,050,000원×5일)	16,200,000 {(118시간-20시간)*15만원+5일*30만원} * 118시간은 총사용 시간이며 20시간은 5일 기본시간 (4시간*5일)	11,050,000
			8,406,480	25,856,700	17,450,220

또한 ▲▲ 건의 경우 유현당 냉·난방 요금을 실제 사용 시간인 70시간으로 부과하여야 하나 8시간의 사용료만 부과하는 등 대관료 산정 및 부과에 오류가 있었고, 대관을 허가한 총 시간(188시간)으로 대관료를 재산정하면 [표 10]과 같으나, 이 경우 1일(24시간 기준) 대관료가 3,300,000원에 달해 대관료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대학교 시설 중 체육관과 안국동 별궁 및 유현당에 대한 대관료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대관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기관주의 · 시정(환수)

제 목 용역 과업 요구 부적정 및 계약금액 조정 미 실시 등

관계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용

가. 협상에 의한 계약 시 부적절한 과업 지시 등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나,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대학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의 계약 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한 (주)㉠㉡㉢㉣㉤㉥㉦ 등 3개사의 제안서 평가를 통해 (주)㉠㉡㉢㉣㉤㉥㉦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18.8.16.), 협상을 실시('18.8.22.)하였다.

이때, 대학교는 '2019년 봄 전경 추가촬영'을 추가 제안하였고, 제작 진행 시 협의하여 겨울 혹은 봄 전경 촬영 1회를 결정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된 후 계약을 체결(계약기간: '18.8.24.~'18.12.20./계약금액 39,600,000원)하였으며, (주)㉠㉡㉢㉣㉤㉥㉦는 봄 전경이 추가되지 않은 영상을 제작하여 먼저 납품한 후, 과업 기간이 지난 2019년에 봄 장면을 촬영하여 '19.5.22. 최종 영상을 납품하였다.

대학교는 상기와 같이 계약기간 내에 수행할 수 없는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여 과업내용에 포함시킨 후, 요구한 과업이 계약기간 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18.12.27. 계약금액을 (주)㉠㉡㉢㉣㉤㉥㉦에게 전액 지급하였다.

나. 용역공정예정표 등 착수 서류 미징수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및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에 따르면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와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교는 '2018년 사이버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개발' 용역을 (주)□□□□□□□□와 계약을 체결(계약기간: '18.6.22.~'18.11.30./계약금액 75,500,000원)하였으며, (주)□□□□□□□□로부터 착수계를 제출('18.6.22)받았으나, 해당 착수계에는 산출내역서만이 첨부되었을 뿐 예정공정표와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

상기와 같이 착수 시 예정공정표 등이 제출되지 않았으면 감독공무원 등은 이를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대학교는 이를 요구·제출받지 않았다.

다. 용역 계약금액 조정 미실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교재 인쇄'에 대해 ○●○●과 용역 계약(계약기간 '19.4.1.~'19.4.15./계약금액 14,650,000원)을 체결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에 따라 위 계약의 감독(검사)공무원은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소속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런 조치 없이 계약상대자가 정당하게 용역을 완수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계약상대자인 ○●○●에 원래 계약금액인 14,650,000원을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 중 '모사' 과정 교재는 308면을 인쇄하도록 계약하였으나 62면이 적은 246면만 인쇄되었으므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체 계약 금액 중 719,510원을

₩ 13,930,490원으로 계약 금액 조정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였다.

※ 과다 지급액 계산식: $(62\text{면} \times 50\text{부} \times 211\text{원}) = 654,100 \times 1.1 = 719,510\text{원}$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진행시 협상대상자에게 불공정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용역 계약 후 착수계를 제출받을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 첨부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2. 용역 완수 검사시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한지 확인 후 용역 대가를 지급하시기 바라며,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교재 인쇄 용역과 관련하여 과다 지급된 719,510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문 화 재 청

기 관 주 의

제 목 교내 현장발굴실습 예산 집행 일부 부적정

관계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적 조사·연구 분야의 전문인 배양의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문화재 발굴실습 및 조사보고서 작성 등의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유적 조사·연구를 위한 기초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현장발굴실습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문화유적학과⁹⁾ 현장발굴실습 교육프로그램 예산지원 기준”(2013.5.31.) 중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의 지원 기준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현장학습 운영지침」 단가를 준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11] “문화유적학과 현장발굴실습 교육프로그램 예산지원 기준”(2013.5.31.) 중 일부 발체

<지원 단가 기준표>						
(1일 8시간/1인 기준)						
구 분		학기 중		방학 중	산출식	지원기준
		주중	주말			
관외	식 비	○	○	○	교수 20,000원 × 1일 = 학생 6,000원 × 0식 =	-현장실습 운영지침 현장실습비 지원단가 준용
	숙박비	○	○	○	교수 40,000원 × 1박 = 학생 15,000원 × 1박 =	
	간식비	○	○	○	2,000원 × 1일 =	
관내	식 비	○	○	○	6,000원 × 0식 =	-현장실습 운영지침 1식 단가 준용
	간식비	○	○	○	2,000원 × 1일 =	-생수, 냉·온음료 등 구입하는 비용
교내	식 비	×	○	○	6,000원 × 0식 =	-현장실습 운영지침 1식 단가 준용

- 간식비 지원은 현장발굴에 한하며, 여름(폭염)·겨울(혹한) 실습·발굴 등을 실시하는 학생들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지원

9) 2017.2.27. 문화유적학과가 융합고고학과로 학과 명칭 변경되었음

이번 감사기간 중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현장발굴실습 예산 집행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72회에 걸쳐 19,365천원이 집행되었다.

상기 [표 11]의 기준과 같이 교내에서 현장발굴실습을 할 경우에는 주말에는 식비 지급이 가능하고, 주중에는 식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현장발굴실습 예산 중 총 13건, 1,489,020원이 주중에 학생들의 식비로 집행되었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현장발굴실습 운영을 위한 예산집행시 관련 운영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권 고

제 목 문화재실측설계기술자 양성방안 개선 강구

관계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용

가. 관련 법규 현황

제정(1999.1.1.) 당시의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16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에는 전통문화사과정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규정하였으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설치법’)을 제정(2012.7.15.)할 때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4년 또는 5년으로 규정하면서, 5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¹⁰⁾으로 정하도록 제12조(수업연한)에 명시하였다.

설치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2009.2.13.) 법안과 ◇◇◇의원이 대표 발의한(2009.11.26.) 법안의 대체법안으로 제정되었는데, ◇◇◇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2010.2.)의 주요내용에는 ‘건축공학인증제¹¹⁾ 도입 등 제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업연한은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리법’)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에 문화재실측설계기술자(이하 ‘실측설계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동 규정은 수리법 제정 이전 1983.8.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 시 도입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편, 「건축사법」 제13조(실무수련)는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을 ▲ 5년 이상의

10) 현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은 없음

11) 감사자는 5년제 학위과정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한국공학교육인증’이 아닌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건축학교육 전문학위과정 인증’으로 판단함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인증¹²⁾된 대학에서 8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인증된 대학원에서 2학기(건축학 학사 학위자) 또는 4학기(건축학 이외 학사 학위자) 이상 이수한 자 등이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2012.5.31. 개정되었다.

다만, 같은 법 부칙(2011.5.30.)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이 2020.1.1.에 폐지되므로,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등은 2019년을 마지막으로 건축사예비시험(5.19./11.17.)에 응시·합격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아 2026.12.31.까지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 현황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대학교’) 기술과학대학 전통건축학과에서는 ‘목조건축물 양식의 시대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복원 설계자, 전통건축의 형태와 공간감을 충분히 이해하여 현대 건축물 설계에서 한국건축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설계자, 보수, 시공현장에서 목구조 내부의 힘의 흐름, 재료의 특성, 구조 형식의 특성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보수, 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¹³⁾있으나, 전통건축학과 개설(2001.3.2.) 이후 수리법에 따른 실측설계 기술자는 아직 배출¹⁴⁾되지 않았다.

대학교는 전통건축학과의 학위를 ‘공학사’로 학칙에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측설계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자격을 우선 취득하여야 하므로, 건축사예비시험이 폐지되는 2020년 이후에는 대학교 전통건축학과 졸업생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인증된 대학에 편입하거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인증된 대학원에서 4학기 이상 이수하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한편, 대학교 전통건축학과 홈페이지에는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졸업 후 실측

12) ‘인증’이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건축학교육 전문학위과정 인증’을 말함(이하 같음)

13) 출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내 전통건축학과 학과소개

14) 문화재실측설계기술자 자격증 취득자는 2019.5.31. 현재 92명이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 개설 이후 취득자는 40명임

설계기술자 자격 취득을 위한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를 할 수 없음에도, 졸업 후 진로 방향의 하나로 실측설계기술자를 안내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실정이다.

다. 문화재실측설계기술자 자격 취득 개선을 위한 노력

대학교는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국립문화재연구소 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 안건(1차/2016.2.26.)으로 ‘실측설계기술자 자격증 취득 개선 요구’를 상정하였는데, ‘현 건축사 양성 시스템은 전통건축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어서, 기존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전통건축을 이해하는 실측설계기술자의 탄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문제 제기와 ‘실측설계기술자의 건축사 조건을 삭제하고, 건축사를 문화재실측설계업 등록요건으로 하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였다.

대학교에서는 수리법 개정 필요 의견을 개진하고, 수리기술과에서는 건축사 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이견이 있어, 정책총괄과에서는 ‘양자 고민이 필요하다’고 정책협의회 결과를 정리하였다.

정책총괄과에서는 대학교가 2차 정책협의회(2017.6.27.)에 위 안건을 다시 제출한 것에 대해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적 검토 및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추후 추진 검토’로 결과를 정리하였으나, 이후 의견수렴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후, 대학교에서는 5년제 학위제 도입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학과 학생과 교수의 증원, 그리고 관련 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채 현재의 전통건축학과 규모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은 강화되는 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목표로 하며 진출하고 있는 문화재보수기술자에 대한 교육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여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학교의 설치 목적인 전통문화전문인 양성과 전통건축학과의 교육 목표 중에 하나인 현대 건축물 설계에서 한국건축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설계자

양성인 점을 고려할 때, 2020년 이후에는 교과과정 등의 미비로 인하여 전통문화 전문인 중의 하나인 문화재수리실측기술자의 양성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대학교의 설치 목적과 전통건축학과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건축사예비시험이 폐지되더라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자체 교과과정만으로도 문화재실측설계기술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모 범 사 례

제 목 도제식 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표준교재 개발 및 복수강사제 도입

관계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용

문화재수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리기능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문화재 수리품질을 좌우하는 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전통기법 숙련을 토대로 실질적인 문화재수리 기능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표준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대학교’)는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교육 정착 및 강사 의존도가 매우 높은 도제식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 과정의 경우 표준교재를 개발하고 일부 복수강사제도를 도입하였다.

[표 12] 표준교재 개발 현황

연 도	과 목	연 도	과 목
2015	소목, 옷칠	2017	모사, 도금
2016	배첩, 철물	2018	지류, 드잡이

[표 13] 도제식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복수강사제 도입’

- 기존 심화교육(강사1) + **특화교육(강사 2)**
- **특화교육** : 옷칠(칠기유물 수리), 단청(별화벽화), 보존처리(조사분석) 등

※ 2016년 이후 옷칠 심화과정을, 2019년부터는 단청 심화과정까지 복수강사제 확대 도입

위와 같이 대학교는 문화재수리기능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 보다 체계적이며 표준화된 교육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판단된다.